

대전지방법원 2013. 12. 12 자 2013머104573 결정 [압류등기말소등기이행]

전 문

신 청 인

1. 송AA
2. 송BB

피 신 청 인

대한민국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피신청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에 관하여,
가. 신청인 송AA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가, 나항 각 기재 부동산의,
나. 신청인 송BB으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은 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의 각 압류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
2.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.

3.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.

판사 노아무개